

마포구청의 소위 '아현포차' 대집행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검토: 노동당서울시당

-청구 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1. <도로법> 제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이행
2. <도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에 따라 충분한 계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위법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5.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6.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8.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9. <경비법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10. <경비법법> 제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이유

1. 현행 <도로법> 제3조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할 것'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마포구청은 30년 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아현포차 철거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음.

2. 현행 <도로법> 제38조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점용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아현포차와 같은 노점 시설도 이에 해당함. 마포구청은 이런 재량권에 근거하여 노원구와 종로구에서는 노점의 양성화를 통한 관리방침이 시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량권에 속하는 다양한 선택 중 노점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배제함으로서 법령이 위임한 재량권을 타당한 근거없이 행사하지 않았음.

*참고: 2012년 법제처의 노원구 노점 관리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3.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에서는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서 대집행의 이행에 행정청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마포구청의 경우, 2016년 7월 30일 행정대집행을 1차로 계고함에 있어 8월 15일까지 기한을 부여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8월 18일에 대집행을 시행하였음. 하지만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지역의 평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8월 3일부터 12일까지는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등 '사회통념상' 마포구청의 계고가 이행되기 어려운 시기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해당 기간 이후 바로 행정대집행을 집행함으로서 법에서 정한 충분한 기간의 보장이라는 의무자들의 권리침해하였음.

*기상청 서울지역 기온 자료:
http://www.kma.go.kr/weather/observation/past_table.jsp?stn=108&yy=2016&obs=08&x=21&y=10

**서울지역 폭염경보 현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9/0200000000AKR20160809091400004.HTML>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는 행정대집행이 시행된 후 이를 관련 양식에 의거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에게 8월 19일자로 건설관리과장의 결제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하였음.

이 보고 내용 중 '강제퇴거여부'에 대해 마포구청은 '아니요'라고 명시한 바, 실제 8월 18일 대집행 과정에서는 명백하게 강제퇴거 조치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 하였음. 이는 사실상 허위 보고를 통한 기망행위로 위법하다 할 것임.

*참고자료: 마포구청, 행정대집행 현황보고, 2016. 8.19.

5.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7조에는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8월 18일 행정대집행 시 마포구청의 집행책임자(건설관리과장)는 의무자의 물건-포장마차 및 냉장고, 에어콘 등-을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것이 손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조하였음.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참고:

6. 현행 <경비업법>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마포구청은 해당 경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마포구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함.

하지만 8월 23일 현재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 상의
입찰정보(<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를 통해서 도급에 따른 입찰
현황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법과 조례에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편의적으로 용역
계약을 실시한 것으로 법을 위반 사항임.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는 행정청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마포구청은 소위 '아현포차' 철거에 대해 상충되는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사유로 특정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서 법을 상 정하고
있는 '공정성'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특히 아현포차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200여명의 집단 민원이 8월 16일에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나 검토사항을 통보하지도 않고 특정 민원에 대한
처리만을 선택적으로 행한 바 있음. 이는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임.

*8월 16일자 민원서류: 서명용지 사본

8.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8월 18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초록색(마포구청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조끼를 입고 있고 용역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어 사실상 의상의 색깔로
해당 행위자의 지위를 표지하고 있음(그 밖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어떤 증표도 보이지
않았음).

하지만 공무원으로 보이는 의상의 관계자에게 소속 부서와 직위를 밝히도록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한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특히 외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상에 대해 공무원임을 확인했을 때 의도적으로 대답을 회피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관련 책임자에게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확인 요청했을 때 '공무원이 맞다'고
확인하였는 바 만약 이 것이 거짓이라면, 공무원에 의해 공무원 사칭죄가 방조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9. <경비업법>제15조의2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8월 18일 강제집행의 과정을 살펴보건데 사실상 <경비업법>을 통해서 고용된
경비원들은 사실상 타인에 대한 위력의 과시 및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이것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장에 의해 지휘되는 행정대집행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명확함. 따라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장은 <경비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도록 종용함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음.

10. <경비업법> 제16조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복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8월 18일 마포구청에 의해 동원된 민간경비원 중 누구도 법에서 정한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 특히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사실상 법적 집행책임자인 마포구청 도시관리과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계도하거나 시정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

이는 법률로써 정한 행정대집행의 집행책임자로서 대집행 절차가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

11.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5조에 의해 명시된 전결사항 중에서 교통건설국 소관의 단위업무 중 지장을 철거 업무는 크게 '지방물 자진철거 촉구'와 '철거대지행계고장(영장)발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이중 전자는 과장 전결사항이고 후자는 국장 전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8월 18일 행정대집행 시에 마포구청 교통건설국장은 휴가 중으로 사실상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 및 영장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를 휴가전 사전결제 했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영장을 발급한 것임으로 그 자체로 원인 무효라 할 것임.

특히 마포구청이 작성한 <아현초교 주변 포장마차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를 2016년 8월 17일에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 바, 사실상 사무전결 처리 규정 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마포구청

관련

규정: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lawsNum=11440103205008>